

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 - 이용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- 계약을 통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- 계약기간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없는경우 계약종료시에도 계약을 존속한다.
단, 노인복지법 제38조 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본인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이용대상 및 법적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 -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명기하고 이용일로 부터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 - 등급변동 도는 계약기간 종료시 재 계약 할 수 있다.
 -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.
-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.
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(보건복지부고시)에 따라서 수가산정 및 비용창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규정에 의한다. 단,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등 경감(9%,6%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0%)이다.

월 한도액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15일이상	2,764,190	2,564,320	1,833,840	1,691,640	1,450,680	

※15일이상 이용시 월한도액 (1,2등급:110%,3,4,5등급 120%) : 방문가족요양시 미적용

■ 1일당 수가 (공단 85%지원포함)

이용시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~3	3~6시간의 80%					
3~6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	32,490
6~8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	44,650
8~10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	56,360
10~13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	56,360
13 이상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240	56,360

* 본인부담금 : 일반 (수가의 15%), 감경대상자,의료급여수급자(수가의 9%,6%)
기초생활수급자 (무료)

* 비급여 식대 1식당 3,400원 , 간식 :2,200원(2회) ,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 부담

* 계약내용에 포함되지않은 비용 :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부담.